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71

발의연월일: 2020. 9. 17.

발 의 자: 우원식 · 양이원영 · 이해식

남인순 · 오영환 · 인재근

윤건영 · 김승원 · 양정숙

윤미향 · 김민석 · 송재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반의 조성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발전, 과학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.

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보호원의 업무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, 특허권·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 비밀의 취득·사용·누설에 관한 단속사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 비하여 이에 대한 수사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따라서 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·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발명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3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·전용실시권 침해, 부정경쟁행위, 영업비밀의 취득·사용·누설 및 디자인권·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의3(보호원의 업무 등) ①	제55조의3(보호원의 업무 등) ①
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	
한다. 다만, 「저작권법」 제12	
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	
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	
의 업무는 제외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의2.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
	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
	관한 법률」 제5조제38호의2
	에 따른 특허권·전용실시권
	침해, 부정경쟁행위, 영업비
	밀의 취득·사용·누설 및 디자
	<u>인권·전용실시권 침해에 관</u>
	한 단속 사무 지원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